

계룡시의회출석 ·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64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2003. 11. 10.

제안자 : 이기원 의원의 2 인

1. 제안이유

- 계룡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임.

2. 주요골자

- 관계공무원의 범위에는 시장, 실·과장, 법 제104조~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, 5급이상 공무원과 면·동장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7조.

계룡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시장
2.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·과장급이상인자
3. 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
4.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본청의 실·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
5. 면·동장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